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31 발의연월일: 2025. 4. 1.

발 의 자: 강선영·박준태·이달희

이인선 · 김대식 · 조지연

고동진 • 이만희 • 김용태

유용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각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시험평가계획 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해당 무기체계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 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험평가 시 그 판정 근거인 다량의 데이터 관리를 개별 연구개발주관기관에 일임하고 있어, 일부 사업에서 데이터 조작 의혹 등문제가 야기된 바 있고, 각 군 및 방산업체 등에서 시험평가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데이터가 생산되지만, 상호 공유 및 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 시스템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시험평가인프라를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명확하지 않고 이에 대한 중장기적인계획이 부재하여, 개별 사업마다 필요한 예산을 반영·확보함에 따라

국가적 차원의 통합 활용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등을 시험평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시험평가기법 연구, 시험평가업무의 기술적인 지원 및 관련 데이터 관리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시험평가의 지원 등)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과학연구소 및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인시험평가의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수행기관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 1. 시험평가결과 분석 등 기술지원
- 2.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 3. 시험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 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과 시험장비의 확보에 필요한 기술지원
 5.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의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기술지원
- 6. 그 밖에 시험평가의 지원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의 지원 등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1조의2(시험평가의 지원 등)
	①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
	장은 제21조에 따른 시험평가
	를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
	여 국방과학연구소 및 제32조
	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을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시험평가 지원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효율적
	인 시험평가의 지원 등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수행기관을 변
	경하거나 추가로 지정할 수 있
	<u>다.</u>
	1. 시험평가결과 분석 등 기술
	지원
	2. 시험평가 데이터 관리
	3. 시험평가기법에 관한 연구
	4.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
	법」 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
	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험시설과 시험장비의 확보
	에 필요한 기술지원

- 5. 시험시설 및 시험장비의 활용에 관한 국제협력 기술지원
 6. 그 밖에 시험평가의 지원 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시험평가의 지원 등의 수 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